

의안번호	제 130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
제2차 변경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3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의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2021년도말 조성액	2022년도 운용계획				2022년도말 조성액
		기정		2차변경		
		수입	지출	수입	지출	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60,576,561	521,124,619	70,000,000	652,324,619	70,000,000	842,901,180

3. 의안전문 : 첨부(2022년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
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

2022. 10.

충청북도교육청

I. 기금운용 총괄

1. 기금현황

기금명	설치년도	설치목적	설치근거	소관부서	비고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019	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	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	예산과	

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수입계획			지출계획		
	'22년 2차변경 (A)	'22년 기정 (B)	증감 (A-B)	'22년 2차변경 (A)	'22년 기정 (B)	증감 (A-B)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652,324,619	521,124,619	131,200,000	70,000,000	70,000,000	0

3. 기금조성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'22년도말 조성액(a)	'22년도 기금운용계획		'22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전년대비 증감 (d-a)	용자금 미회수채권 (e)	연도말 총규모 (f=d+e)
		수입계획(b)	지출계획(c)				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60,576,561	652,324,619	70,000,000	842,901,180	582,324,619	0	842,901,180

Ⅱ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

1. 기금운용 총칙

가. 기금 설치 개요

- 설치근거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 -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설치목적: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- 설치년도: 2019년(준속기한 2023. 12. 31.까지)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1) 기금사업의 목표
 -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
- 2) 2022년 기금사업 변경 개요
 -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속비 사업, 미래 교육 수요 등에 대비
 - 2022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부터 기금 조성
 - 조성한 기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및 운용
- 3)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

가)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'21년도말 조성액 (a)	'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2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융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 조성규모 (f=d+e)
		조성계획 (기정)	2차 변경 조성계획(b)	집행계획 (c)			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260,576,561	521,124,619	652,324,619	70,000,000	842,901,180	0	842,901,180

나) 기금 조성 재원 현황

(단위: 천원)

기금재원별	'21년도말 조성액 (a)	'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2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융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 조성규모 (f=d+e)
		조성계획 (기정)	2차 변경 조성계획(b)	집행계획 (c)			
합계	260,576,561	521,124,619	652,324,619	70,000,000	842,901,180	0	842,901,180
교특전입금	161,500,000	518,000,000	649,200,000	0	810,700,000	0	810,700,000
예치금회수	96,100,000	0	0	70,000,000	26,100,000	0	26,100,000
이자수입	2,976,561	3,124,619	3,124,619	0	6,101,180	0	6,101,180

다) 지원대상

-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법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
-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- 지방채상환 또는 임대형민자사업(BTL)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
-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- 재정여건상 교육정책사업,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
4)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

(단위: 천원)

자산구분	'21년말 잔액	'22년 계획			'22년 2차 변경계획안			증감 (b-a)
		신규	처분	잔액(a)	신규	처분	잔액(b)	
합 계	260,576,561	781,701,180	70,000,000	711,701,180	912,901,180	70,000,000	842,901,180	131,200,000
금융자산	260,576,561	781,701,180	70,000,000	711,701,180	912,901,180	70,000,000	842,901,180	131,200,000
예치금	257,600,000	778,576,561	70,000,000	708,576,561	909,776,561	70,000,000	839,776,561	131,200,000
유가증권	0	0	0	0	0	0	0	0
기타	2,976,561	3,124,619	0	3,124,619	3,124,619	0	3,124,619	0
부동산	0	0	0	0	0	0	0	0
토지	0	0	0	0	0	0	0	0
건물	0	0	0	0	0	0	0	0
기타	0	0	0	0	0	0	0	0
기타자산	0	0	0	0	0	0	0	0

5)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: 해당 없음

2. 자금운용 계획

가. 자금수지총괄

(단위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수입항목	'22년 수입액	'22년 2차 변경 수입액	증감	지출항목	'22년 지출액	'22년 2차 변경 지출액	증감
합 계	781,701,180	912,901,180	131,200,000	합 계	781,701,180	912,901,180	131,200,000
교특회계 전입금	518,000,000	649,200,000	131,200,000	비용자성 사업비	0	0	0
기부금	0	0	0	융자성 사업비	0	0	0
융자금 수회	0	0	0	인력운영비	0	0	0
예치금 수회	260,576,561	260,576,561	0	예치금	711,701,180	842,901,180	131,200,000
예탁금 회수	0	0	0	예탁금	0	0	0
예수금	0	0	0	예수금 원리금상환	0	0	0
이자수입	3,124,619	3,124,619	0	기본경비	0	0	0
기타	0	0	0	기타	70,000,000	70,000,000	0

나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과목		산출기초	'22년 2차 변경계획안 (A)	'22년 계획 (B)	증감 (A-B)
장 관 항	목				
20000	자체수입		3,124,619	3,124,619	0
	24000 이자수입		3,124,619	3,124,619	0
	24100 이자수입		3,124,619	3,124,619	0
	24101 예금이자수입	3,124,619,000원=	3,124,619	3,124,619	0
40000	기타		260,576,561	260,576,561	0
	42000 예치금회수		260,576,561	260,576,561	0
	42100 예치금회수		260,576,561	260,576,561	0
	42101 예치금회수	260,576,561,000원=	260,576,561	260,576,561	0
50000	내부거래		649,200,000	518,000,000	131,200,000
	51000 전입금		649,200,000	518,000,000	131,200,000
	51100 전입금		649,200,000	518,000,000	131,200,000
	5110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649,200,000,000원=	649,200,000	518,000,000	131,200,000
수입합계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
다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지출계획					목	산출기초	'22년 2차 변경계획안 (A)	'22년 계획 (B)	증감 (A-B)
부 문	정 책	단 위	세 부	사업내역					
교육일반				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교육정책기획관리				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예결산관리				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예산관리				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기금관리				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예치금					700예비비 및기타	842,901,179,240원=	842,901,180	711,701,180	131,200,000
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					810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	70,000,000,000원=	70,000,000	70,000,000	0
지출합계							912,901,180	781,701,180	131,200,000

3. 성인지 기금운용계획: 해당 없음

4.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

가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	집 행 액							잔액 (a-b)
	계 (a)	교특 전입금	기부금	융자금 회수	예수금	이자수입	기타수입	계 (b)	비용자성 사업비	융자금 사업비	인력 운영비	기본경비	예수금 원리상환	기타지출	
~2015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6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7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8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2019	153,000,000	153,000,000	0	0	0	0	0	0	0	0	0	0	0	0	153,000,000
2020	40,943,186	40,000,000	0	0	0	943,186	0	0	0	0	0	0	0	0	40,943,186
2021	163,533,375	161,500,000	0	0	0	2,033,375	0	96,900,000	0	0	0	0	0	96,900,000	66,633,375
2022	652,324,619	649,200,000	0	0	0	3,124,619	0	70,000,000	0	0	0	0	0	70,000,000	582,324,619
계	1,009,801,180	1,003,700,000	0	0	0	6,101,180	0	166,900,000	0	0	0	0	0	166,900,000	842,901,180

나.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치(탁)처	'20년도말 현재액	'21년도말 현재액(a)	'22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비고
합 계	-	193,943,186	260,576,561	842,901,180	582,324,619	
예치금	농협은행	193,943,186	260,576,561	842,901,180	582,324,619	
예탁금	해당없음	0	0	0	0	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8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